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
----------	----

제출년월일 : 2000. 7.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개정이유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조항 개정

-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던 것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도록 의무화(안 제23조제2항)
- 임신한 여성의 집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나. 특별휴가 관련규정 개선·보완

- 장기제직휴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을 제직기간 중 10일간으로 함(안 제23조제7항)
- 조기퇴직자와 고용직공무원에게도 3월의 퇴직준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9항)
-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하도록 함(안 제24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공문 사본1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조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별 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가)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u>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신 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⑤.....</p>
<p>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p>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 재직기간중에</p>
<p>⑦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⑧.....</p>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⑨.....정년퇴직이나.....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날부터.....</p>
<p>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⑩.....</p>
<p>제24조(휴가 기간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휴가 기간중의 공휴일).....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p>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비고	구분	대 상	일수	비고
결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 우 자(치)	1		...	배 우 자	...	
사망	배 우 자	7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자 녀	3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숙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탈상	배 우 자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탈상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기산할 수 있다.				※ 비고 :			

10092 경 상 북 도 관인생략 인편

우 702-702 대구 북구 상격동 1443-3 / 전화(053)950-2211 / 전송 950-2380
총무과 과장 : 장 승 용 사무관 : 이 경 표 담당자 : 구의서

문서번호 총무12140- 3602
시행일자 1999. 12. 24. (년)
(경 유)
받 음 받는곳참조
참 조

선 람	부시장	김복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99.12.24	결 재	과장	TN
수 번호		2494	과장	김복기	
처 리 과		총무과	공 람	김복기	
담 당 자		이경표	공 람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이첩시달

1. 행정자치부 운영 12100 - 171('99. 12. 3)의 이첩입니다.
2.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동보하니 개정토록 하시고 시·군에서는 이 표준안에 의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포예정 보고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자치행정국장 김 휘 동

받는곳 : 러01-23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공가)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p> <p>6. ~ 8. (생략)</p>	<p>제22조(공가)-----</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 -----</p> <p>-----</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③-----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p>

<신 설>

④ · ⑤ (생 략)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 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 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생 략)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 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 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 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 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⑥(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재직기간
중에-----

⑧(현행 제7항과 같음)

⑨-----정
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 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
를 얻을 수 있다.

⑨ (생략)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
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결
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